

2008. 3.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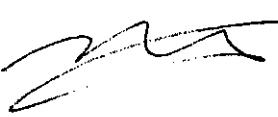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김명섭 의원 (~~선택또는~~ 투인)

외 2인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김명섭	
이재우	S. Jai-woo
강천상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3
------	------

발의연월일 : 2008. 3.
발의자 : 김명섭 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업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글자

가.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업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6조)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 의정담당주사를 의사담당으로 한다.

붙임 1.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②항중 “의정담당주사” 를 “의사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u>의정담당주사</u>로 한다.</p>	<p>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사담당</u>으로</p>